

이슈페이퍼

- 전화: 02-832-4211~2 홈페이지: www.ppip.or.kr 날짜: 2013년 6월 26일(수)
- "보육교사 블랙리스트사건, 어떻게 볼 것인가?(담당: 제갈현숙)"

보육교사 블랙리스트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 보육교사 권한 보장과 어린이집 투명성 제고의 상관성

- 요약 -

- □ 보육 현장의 비리 문제를 감시하고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적임자는 보육교 사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보육교사와 원장(시설장)과의 관계가 종속적인 성격이 강해서, 보육교사의 독립적인 판단과 행위가 사실상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 임. 지 난 5월 대구시 달서구에서 풍문으로만 떠돌았던 '보육교사 블랙리스트'가 발견되면 서 민간어린이집 운영자의 무소불위 권력의 폐해가 드러남.
- □ 블랙리스트의 사회적 의미: '원장에게 찍히면 안 된다'는 보이지 않는 형틀로 보육교사는 아이들을 위한 판단보다는 원장의 지휘와 명령에 종속적임. 원장이나 시설장들은 대부분 협회에 등록되어 있고, 이들은 민간보육시설의 시장에서의 우위적지위, 이권 및 권력을 지키기 위해 정보 공유 및 실력행사, 이들의 단체 행동은 아이들을 위한 요소보다는 이익집단의 이해를 위한 요소가 큼. 결국 보육교사들의독립적인 지위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보육현장의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는 시설장 및 원장이 됨.
- □ 어린이집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교사 권한 강화 방안: 보육지원방안 개선 및 국공립 비율 증대를 위한 예산 확충,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철저한 적용, 보유교사고용주체를 지자체, 상시적인 근로감독 강화 및 내실화.
- □ 8253제도 실현: 10-12시간 근무가 아닌 8시간 근무와 2교대제 시행, 5시간 보육 3 시간 수업준비

2013-06

보육교사 블랙리스트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1)

: 보육교사 권한 보장과 어린이집 투명성 제고의 상관성

제갈혅숙

1. 서론

2013년 벽두부터 어린이집 비리 사건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회적으로 부각된 비리의 유형으로 첫째, 특별활동비와 음식재료비 유용, 허위 보육교사 등록을 통한 보조금 횡령, 식자재 및 시설공사비 허위청구 등과 같이 다양한 편법과불법을 동원한 국고 보조금 횡령 및 어린이집 재정에 대한 부적절한 착복이다. 둘째는 급식관련 비리로 식재료비를 줄이기 위해 식재료의 유통기간을 무시하거나, 질낮은 식재료를 사용한 경우가 해당한다. 셋째는 영유아에 대한 부적절한 케어, 학대,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비상식적인 대상자에 대한 태도이다. 이와 같은 비리는가능한 적은 비용을 투입해서 보다 많은 이윤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집 시설운영자의 사리사욕과 맞닿아 있다.

2012년도 말 기준으로 전국의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은 단 5.2%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대부분 어린이집은 시설운영자의 개인적인 운영목적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즉 어린이집 운영 목적이 영유아 양육 및 보육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이해를 달성하는데 있다기보다는 개인이 '사업'적인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공공재적인 사회서비스 성격을 담지한 보육서비스를 애초부터 민간중심적인 공급체계로 구조화한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다. 더욱이 보육료지

¹⁾ 이 글은 2013년 6월 26일 국회의원 남윤인순, 공공운수노조 등 주최로 개최된 「어린이집 운영투명성, 강화방 안은 무엇인가?」토론회 발제문으로 작성된 글의 일부이다.

원 사업이 '무상보육'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민간공급자들이 보육시장에 진입하게 되었고,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질서는 사후적인 지도 및 점검으로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육 현장의 비리 문제를 감시하고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적임자는 보육교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보육교사와 원장(시설장)과의 관계가 종속적인 성격이 강해서, 보육교사의 독립적인 판단과 행위가사실상 보장되기 어렵다. 더욱이 지난 5월 대구시 달서구에서 풍문으로만 떠돌았던 '보육교사 블랙리스트'가 발견되면서 민간어린이집 운영자의 무소불위 권력의 폐해가드러났다.

이 글은 보육교사 블랙리스트 사건을 조명해봄으로써 사건이 갖는 의미와 해결방 안 그리고 보육교사의 독립적 권한 강화가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미칠 영 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민간어린이집 중심의 공급구조가 장기적으로 더 나은 공공성 달성을 위해 개혁해야할 과제를 재고한다.

2. 대구 달성구 보육교사 블랙리스트 시건

1) 사건개요

지난 5월 13일 CBS 김현정 뉴스쇼를 통해 어린이집비리고발상담센터 김호연 센터장은 어린이집 원장 및 시설장들의 연합회 쪽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이것이 연합회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블랙리스트의 대상자는 내부고발이나 공익제보를 목적으로 보육교사나 학부모들이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에 제보를할 경우, 이 사실이 다시 해당 원장에게 전달되어 보육교사는 블랙리스트로 학부모들은 블랙컨슈머로 관리된다는 사실이었다. 이후 5월 27일 MBC PD 수첩에서 관련이슈인 <어린이집 공개하라!>가 보도됐고, 5월 28일 대구지방노동청에 관련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40조 취업방해죄로 고발 조치되었다. 블랙리스트 사실 확인이라는 공론화는 매우 이례적이었고, 그만큼 사회적 반향도 상당했다.

대구시 달서구에 위치한 리라어린이집의 원장은 2012년도에 업무방해의 이유로 퇴사한 교사들을 고소했다. 이 고소를 계기로 해당 어린이집을 퇴사했던 교사들은 자신들이 블랙리스트로 협회로부터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해당 교사들이 고소를 당한이후 용기를 내어 발표된 간략한 정황은 다음과 같다.

2012년 평가인증을 앞두고 시설 공사 및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두 달 여간 교사

들의 야근이 지속되었다. 공사 중 아이들에겐 매우 위험한 보육환경이 지속되었고, 간식 등 어린이집의 문제점에 대한 항의는 원장의 폭언으로 묵살되었다. 그러던 중 4월말에 이 사건의 직접적인 단초가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평가인증 준비를 위해 야근 중이었던 교사들에게 원장은 종량제 쓰레기봉투 속에 보관 중이었던 김밥재료로 저녁식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것은 며칠 전 원장의 자녀가 소풍 때 사용하고 남은 재료로 어린이집 냉장고에 쓰레기봉투 속에 뒤섞여서 보관되어 있었다. 교사들은 저녁식사를 하지 않고, 일을 모두 마친 후 퇴근하였다. 이 사건 이후 교사들은 각각 원을 그만 두었다. 이를 두고 원장은 해당 교사에 대해 업무상방해로 고소를 하기에 이른다. 어린이집 원장은 대구지역 민간어린이집협회에 관련 사실을 알렸고, 협회에서 전체 협회원에게 해당 교사들 채용에 주의하라는 메일이 공지됐다.2)

어린석결 운영에 할 수고하시는 원광님들 안녕하세요!!

2013년도 선입교사 채용시 참고하시면 좋을듯해서 연합회의 건경에 따라 아래 사항을 올림니다.

지난해 2012년 1학기조 4월 평가원증 준비하는 시설에서 신학기를 시작하고 평가인증 한 말도 채 남기 무지 않고 4원25일 월급받은 다음난도 교사권원 당함해서 어떠한 연급도 등 모도 없이 무단권근한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결과에게 막대한 전체적 피해와 십 디치증처을 일인, 교사를 상대로 먼체 업무병해진으로 소항증에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2012년 5월시작-학계원 행동으로 인해 원과 아이들의 피해는 돌은 원기의 교육의 자공실 마정치 무치권한 한건도 있었습니다(참고) 입무대한 무역인한 행동으로 인해 원과 아이들의 피해는 돌은 원기의 교육의 자공실 마지 해손시키는 행위는 더 이상 간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은 멀고마-길고~)

그에 전유된 교사들을 윤리트리오니, 광고하셔서 더 이상 원에 피해를 구는 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광님들의 구의학 정조를 부탁 드립니다.

독 법회기원이 한된다하여도 우리 원광님들이 그룹에게 간뜻을 되우면 기회를 받으시 만을 이 주어 권정 바른 교사로 거듭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교사가 근무 중인 시설 권광님은 연락구시고 정보를 공유했으면 합니다.

-소총간에 연류된 교사이리—

주인

최 디 ○ - 74.11.9 - 12년도 영원소체 시원에 원광자격증 빌려주고 있다는 소문 등 경 ○ - 70.11.30 ~ 회사관인 복지부,도등부만원등 구청장광아가고 등~ 박성 ○ - 85. 1. 1. ~ 아기로 여러인 옮기다니고 있음 경 데 ○ - 83. 11. 4 ~ 12년도 가장이면이집 근무증 배 선 ○ - 75년생 경 먼 ○ - (연중이얼마))

-타구에서도 홍 문제를 임으킨 교사가 있으시면 울리주시면 최고 보고 보고 내다.

* 시설연합회가 작성한 블랙리스트

같은 원에서 업무를 지속했던 한 교사의 경우, 평가인증 이후 원장의 일방적인 사 직 종용이 시작됐다. 원장은 평가인증을 위해서 경력교사가 필요했는데, 해당 교사의

^{2) &}quot;교사 채용 시 주의해 주세요! 리라어린이집 교사가 평가인증 앞두고 단체 무단결근 및 퇴사 건으로 인해 법적 소송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사 모집원에 피해 가지 않도록 연합회에서 알려드리오니, 리라에서 근무한 교사 채용 시 연합회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을 앞두고 미리 알아보시고 원에 피해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적격이라는 이유로 입사시킨 후, 평가인증을 마치자마자 시설연합회의 공유 문건인 블랙리스트를 내밀며 퇴사를 종용한 것이다.

이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5월 29일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10여개 노동 및 시민단체가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재취업을 방해하기 위해 교사들의 신상이 담긴 블랙리스트 문건이 작성되고 유포된 점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후 6월 3일 대구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사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며 블랙리스트 작성 및 유포에 대한 사과를 밝혔다.

2)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의미

보육교사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이야기되는 것이 어느 곳에서든 '원장에게 찍히면 안 된다'는 것이다. 원장이나 시설장들은 대부분 협회에 등록되어 있고, 이들은 민간 보육시설의 시장에서의 우위적 지위와 이제까지 누렸던 그들의 이권이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실력행사를 한다. 이러한 행태 자체는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단체 행동이 공공의 이해를 위배하는 경우, 집단행동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한 담합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장의 교사들은 원장과의 관계에서 독립적인 위치를 점유하기 어렵고, 이러한 관계의 특수성으로 보육현장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변하거나 제보하기 어렵다. 용기를 내서 원장에게 항변하거나 비리나 의혹에 대해 제보를 하더라도 교사가 보호되기보다는 신분이 노출되어 오히려 블랙리스트로 관리되면서 재취업이 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얻게 된다.

이러한 구조가 고착화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보육교사들은 영유아를 위해 돌봄을 제공하기보다는 원장의 사리사욕에 맞춰 때로는 비리에 담합하거나 때로는 보고도 못 본 척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게 된다. 즉 원장이나 협회의 독점적인 권한에 대응할 만한 교사의 권한이나 보호가 부재하다면, 보육현장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주체로써 아이들의 지위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3.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고려 요소

1)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의 내실화

복지부는 2010년부터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해서 부정사용 이용불편 신고 및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동에 대한 급/간식, 위생, 안전상 유해한 환경을 제거하고 보육료 부정사용 행위 근절을 통해 어린이집 회계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아동 보육의 최적 환경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표 1>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접수 및 처분건수(2010-2012.8, 단위: 건)

구분	접수건수							처분 건수		ИПО	현지
연도	계	보육 료	보조금	어린 이집 운영	보육 교직원	아동 학대	기 타	전체	포상금 지급	신고인 철회	현지 조사 중
계	665	260	3	222	76	15	89	521	104	123	21
2010	201	83	2	54	19	-	43	157	18	44	-
2011	322	133	-	98	33	14	44	260	58	62	-
2012.08	142	44	1	70	24	1	2	104	28	17	21

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 접수건수를 살펴보니, 2012년(8월까지)의 접수건수는 142건, 포상금(보조금 환수액에 따라 신고자 에게 포상금 지금)을 받은 건은 28건(19.7%)에 불과했다. 제도 시행 이후 전체 누적 계도 접수건수는 총 665건이고 이중 처분건수는 521건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이용 실적이 낮은 원인으로 복지부는 홍보부족과 신뢰부족을 꼽았다. 그러나 정부의 진단 은 매우 수동적이고 적절한 진단으로 보기 어렵다.

정부는 상시적인 지도감독인력의 부족으로 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어떤 형태라도 개입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를 설치했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시민들의 인지상태는 상당히 낮고, 보육교사의 경우 신변보호에 대한 미지수 때문에 신고인 중 단 10.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가 보육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제고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센터의 적극적 운용은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해당 센터의 설치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쉬운 접근권이 보장되어야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지자체와 어린이집의 유착관계의 위험성

지난 5월 송파경찰서 수사팀 앞으로 "저희는 이제 영원히 취업 못한대요. 원장들한 테 명단이 돌려졌대요. 우리를 살려주세요."란 문자가 도착했다. 문자를 보낸 보육교사는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2년 6개월가량 근무했고, 어린이집 비리를 제보했다는 의심을 받아 3월 해고됐다. 그런데 원장이 해당 교사를 의심하게 된 계기는 바로 올초 서울시 보육담당 공무원들로부터 불시 점검을 받게 되었을 때, 점검 나온 공무원들이 원장에게 보육교사들에게서 민원이 접수됐다는 식의 얘기를 공공연히 했다는 것이다.

이 사례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문제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원칙을 공무원들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2011년 제정되어 아직 법의 엄중함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가 이러한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공익을 위한 제보는 더욱더 수면으로 나오기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이 사실을 왜 해당 원장에게 알려줬는가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즉 이들의 관계가 지극히 공무적이라면 이러한 정보공유는 불필요한 행위에 불과하다. 즉 이 관계의 이면에는 지자체와 어린이집 유착관계가 중요한 배경으로 자리한다. 2012년 국정감사 조사에 따르면 한 지자체의 경우 저녁 9시쯤 어린이집 학부모가 인터넷으로 민원을 넣었는데, 민원을 접수한지 30분도 되지 않아 어린이집 원장에게 전화를 받아서 협박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 교사나 학부모는 시·군·구에 민원을 넣으면서 시·도나 복지부에도 접수한다고 한다.

상황이 이 정도면 정부는 지자체와 어린이집의 유착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의 경우 선거를 매개로 부적절한 관계가 확대되고, 지역 유지로 협회장들의 사회적 권력은 각 지역에서 재생산되는 구조에서 민간협회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공공부문의 역할 회복이 절실하다. 각 지역에서 세를 이루고 있는 민간어린이집협회는 스스로 정화기능을 갖기보다는 구청 및 구의원에

대한 로비를 통해 공공의 이해에 폐해가 될 정도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않는다면 보육계 내부의 위계질서는 바뀌기 어려울 것이다.

4. 결론: 어린이집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교사 권한 강화 방안

교사들의 의무는 아이들이 영유아기 동안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간에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육교사의 고용관계가 민간보육원장의 손에 달려있고, 원장들은 그들이 정해놓은 규칙에 어긋나는 보육교사에대해 해고뿐만 아니라 재취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블랙리스트까지 작성해서 보육현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 보육교사들의 우선 철칙은 원장의 규칙에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다. 그 규칙이 설사 아이들에게 해가 되더라도 보육계를 떠날 결심을 하지 않는 이상 수용해야하는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을 제안한다.

1) 보육지원방안 개선 및 국공립 비율 증대를 위한 예산 확충

바우처 방식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시켜 줄 것이라고 강조됐지만, 민간중심의 어린이집 구조에서 문제제기를 하거나 제보를 한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에서 기피하는 블랙 컨슈머로 낙인찍힌다. 즉 현재 민간주도적인 어린이집 구조에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정보도 제한적이고, 원장의 지배적인 권한에 대응할 만한 세력이 존재하기 어렵다. 이 같은 현실에서 정부의 바우처 정책은 민간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제고보다는 공적 서비스에 민간참여를 극대화시킨 결과만을 도출시켰다. 그러므로 증명되지 않는 바우처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강화의 환상에서 깨어나 보육지원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은 비단 전달체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급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와 병행되어야 한다. 단 5.2%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지 않는다면, 민간어린이집 운영을 변화시켜야할 동기가 매우 부족하게 된다.

민간이 긴장하고, 국공립과 경쟁해야만 하는 수준의 비율로, 적어도 한 가정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 국공립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민간을 선택하는 구조자체가 변해야 한다. 그러므로 보육료지원에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보육예산규모

에서 국공립 확충을 위한 재정확보 및 비율을 높여야 한다. 2013년 보육사업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갖는 것은 영유아보육료지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63%에 해당한다. 반면 국공립 신축 예산이 포함된 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은 0.6% 수준에 머문다.이 정도 예산으로 현재 보육공급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 보육교사 권한 강화를 위한 방안

(1)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철저한 적용

최근 벌어진 블랙리스트와 같은 사건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통용돼 왔던 불법행위가 향후로는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체득시켜야 한다. 공익적인 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제보자에게 그 어떤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된다면 보육교사들은 블랙리스트의 악몽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목적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어린이집의 각종비리는 국민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2) 보육교사 고용주체 전환: 지자체 직접 고용

현재 원장과 보육교사의 고용계약관계를 전향적으로 전환할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교사의 고용자체가 원장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교사의 권리 및 권한 자체가 상당히 제약적이다. 반면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 등으로 교사에 대한 임금의 상당부분은 현재 공공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즉 학교교사와 보육교사의 노동의 성격은 매우 흡사하다. 다만 직업 진입경로의 차이와 공공재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역사적 차이로 인해 두 직종의 차이가 당연하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중등교육의 상당 부분은 사립학교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교원의 신분은 모두 공무원으로 보장받고 있다. 보육현장은 규모의 차이 등으로 당장 학교 현장과 비슷한 구조로 통일화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지자체 차원에서 보육교사에 대한

직접 고용형태는 시도할 수 있다. 즉 고용주가 각 어린이집의 원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되는 것이다. 물론 공무원신분으로의 전환에 대한 재정적 부담으로인해 지자체와 국가가 이러한 법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고용주체의 변화가 갖는 의미가 보육교사의 공무원지원 확보라기보다 민간어린이집 원장의 독점적 권한으로부터 독립적인 교사들의 권리 제고라는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현실 가능한 실마리는 충분히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3) 상시적인 근로감독 강화 및 내실화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6월 18일 대구 서부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25곳을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임금체불에 대한 수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대구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보도자료. 6월 19일). 수사 결과 25곳 중 23곳이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고, 이 중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의 어린이집이 2곳, 퇴직금을 떼먹은 어린이집만 11곳에 달하며 체불액의 규모는 1,300만원이 넘었다.

고용노동청의 이러한 감독은 민간 보육원장들의 고용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의식을 갖게 할 수 있고, 위법행위는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례를 보편화시키는 게 도움이 된다. 이러한 변화는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회피한다면 어린이집을 운영할수 없다는 인식을 자리 잡게 할 것이다. 나아가 최소한의 고용주로서의 책임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거나 위법사항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인가를 취소하는 적극적인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자격유무를 떠나 어린이집을 설치해 온 것이이제까지 정책방향이었다면 앞으로는 공공재를 운영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주체로서의 민간원장 자격기준을 세워 탈락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 기준의 중요한 잣대로서 근기법 준수 여부가 유의미할 것이다.

보육협의회, 보육교사협회, 그리고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는 지자체가 보육교사를 직고용할 것, 10-12시간 근무가 아닌 8시간 근무와 2교대제 시행, 5시간 보육 3시간 수업준비를 내세운 '8253제도'를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 보육의 4대 악으로 회계조작, 저질 급간식, 블랙리스트, 열악한 노동환경을 꼽았다. 이를 위해서도 민간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은 중요하다. 이에 국공립 확충을 위한 보육재정 조정,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 내실화, 지자체와 어린이집 유착 단절,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상시적인 근로감독, 보육교사에 대한 지자체 직접고용은 의미 있는 대안으로써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